

의안번호	제 12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##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##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31일  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### 2. 주요내용

#### ○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##### 가.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용자금 회수 (이자포함)	예탁금 원금회수	예치금 회수	예수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
<b>계</b>	19,788	0	0	0	0	0	17,986	0	180	1,622
투자진 흥기	19,788	0	0	0	0	0	17,986	0	180	1,622

##### 나.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비용자성 사업비	용자성 사업비	인력 운영비	기본 경비	예탁금	예치금	차입금 원리금 상환	예수금 원리금 상환	기타 지출
<b>계</b>	19,788	6	0	0	0	1,603	18,179	0	0	0
투자진 흥기	19,788	6	0	0	0	1,603	18,179	0	0	0

### 3. 의안전문 : 첨부 (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)

### 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